

## 고객통지문

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.  
 “귀하의 자동차는 감속기플랜지샤프트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.”

### 1. 제작결함의 내용

가	차명 또는 부품명	(주)이비온 E6
나	형식	HKL6600BEVK
다	제작년월일	2021/05/01 ~ 2021/12/10
라	결함장치 또는 부품	동력전달장치 (감속기플랜지샤프트 - 후방 조수석 방향) ※감속기플랜지샤프트: 감속기의 구동축에 삽입되는 플랜지형태의 샤프트로서 감속기 출력축의 동력을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부품
	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감속기플랜지샤프트</p>	
마	결함원인	감속기 플랜지 샤프트의 열처리공정에서 고주파장비의 오사용으로 부품의 표면 강도가 기준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차량 주행중 파손될 수 있음.

### 2.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내용

가	시정조치기간	2024년 05월 22일부터 이후 완료 시까지
나	시정조치방법	대상 자동차에 대해서 전량 신규 부품으로 교체.
다	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부서	(주)이비온 서비스 센터 (1588-6389)
라	시정조치 비용	전액 무상
마	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	차량의 사용중 해당 감속기플랜지샤프트가 파손되면서 차량 구동축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차량이 정지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음.

### 3. 제작결함시정 관련 보상내용

가	보상 관련 근거 및 설명	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, 시정조치 실시 전/후에 고객이 본 시정조치와 동일한 현상으로 수리비용을 유상으로 부담하였을 경우, 수리에 대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,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상처리 금액을 보상할 예정입니다
나	보상 기간	2023년 05월 22일부터 시정조치기간 종료 시까지 자비로 시정한 금액을 보상 예정
다	보상신청 접수장소	(주) 이비온 고객지원실
라	보상신청 연락처	1588-6389 (주) 이비온 고객지원실

### 4. 추가 안내사항

가	(주)이비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입니다.
나	(주)이비온 고객지원실 1588-6389 (서비스센터 안내 및 이의제기, 문의사항 문의처)

#### ※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상 공지 ※

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차량을 시정조치 하지않고 차량을 대여하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없이 리콜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개정(시행 '20.10.8)에 따라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